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계 30321-41	(전화: 731 - 6393 )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보조기관	건설부 국장 주무국장 개발2국장	한조기관 한조등재관 법무담당관 (고시안심사) 도시계획과장	 
기안책임자	심관종 (이상준)		
경유 수신 참조	관안참조	발신명의	시 장
제목	주무개발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b>132</b>		
(제1안) 내부결재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 12. 1)로 주무개발 재개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0호(74. 12. 6)로 지적승인및서울특별시			
고시 제231호(85. 4. 4)로 사업계획 변경안 도화구역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 부 : 사업계획 변경조서 1부. 붙.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오			
"주무개발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결정"			
1. 건설부 고시 제470호 (73. 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0호(74. 12. 6)로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31호(85.4.4)			

도 사업계획 변경한 도곽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5조 및  
 동시행령 제 5조, 제 5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매와 같이 재개발 사업  
 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발과와 마포구청  
 주택과에 의뢰하고 지역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8. .

서울특별시장

( 아 매 )

1. 사업의 명칭 : 도곽구역 주택개발재개발사업

2.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도곽동 363번지 일원

3. 면 적 : 171,480  $m^2$

4. 토지이용계획

용 도	당 요 면 적( $m^2$ )	변 경 면 적( $m^2$ )	종 류( $m^2$ )	비 고
부 지	151,700	변경없음	-	
도 도	18,679	"	-	
공공 부지	1,101	"	-	

5. 건축 계획

구 분	당 요	변 경	종 류	비 고
주된 용도	주택개발 주택개발시설	변경없음	-	
건립형태	단독주택	"	-	
고 령 륜	아파트 25% 이내 주택 50% 이내	"	-	
층 수	230 층 이내	단독 200층이내 아파트 240층이내	- 30 + 10	

최고 높이	42미터 이내	변경없음	-	
배치 도	생략			

(제3안)

수신 : 읍부지장관

제목 : 관보 게재 의뢰

1.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계획 제계반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별첨 도시안을  
통보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도시안 2부. 끝.

(제4안)

수신 : 마포구청장

참조 : 주택국장

제목 : 주택계획 제계반 사업계획 변경 결정 (통보)

1.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58조 제1항의  
의거 제 관내 도화구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안 2부, 도시안 2부, 도시안 2부, 도시안 2부, 도시안 2부, 도시안 2부, 도시안 2부,  
도시안 2부에 통보함 것.

첨부 : 1. 도시안 2부

2. 사업계획 변경 결정 조서 2부. 끝

(제5안)

수신 : 건설부 장관

참조 : 도시계획국장

제목 : 주택계획 제계반 사업 변경 통보 (보고)

1. 도시계획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58조 제1항의

규정이 되기 당시 관내 도락구역의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계획을 범선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하였거 보고합니다.

첨부 : 1. 고시안 1부

2. 사업계획변경 결정조서 1부. 끝.

( 제 6 안 ) 1134

수신 :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제목 :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계획 변경 결정 ( 통 보 )

1. 도시개발법 제 5조 및 동시행령 제 5조, 제58조 제 1항의

규정이 되기 도락구역의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계획을 범선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하였거 통보합니다.

첨부 : 1. 고시안 1부

2. 사업계획 변경 결정 조서 1부. 끝.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470호 (73.12.1)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0호 (74.12.6)로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31호 (85.4.4)로 사업 계획결정한 도화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및 동시행령 제5조,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마포구청주택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10. .

서울특별시장

(아 래)

1. 사업의 명칭 : 도화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2.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63번지일원
3. 면 적 : 171,480m<sup>2</sup>
4. 토지이용계획

용 도	당초면적(m <sup>2</sup> )	변경면적(m <sup>2</sup> )	증감(m <sup>2</sup> )	비고
택 지	151,790	변경없음	-	
도 로	18,679	"	-	
공공부지	1,101	"	-	

5. 건축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주된용도	주택및 근민생활시설	변경없음	-	
건립형태	아파트및 단독주택	"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건폐율	아파트25%이내 단독 50%이내	변경없음	-	
용적율	230%이내	단독 200%이내 아파트240%이내	-30 +10	
최고높이	42미터이내	변경없음	-	

배치도 생략

도화구역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결정조서

1. 사업의 명칭 : 도화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2. 위치 : 마포구 도화동 363,376,418번지일원
3. 면적 : 171,480 ㎡
4. 토지이용계획

용도	당초 면적 (㎡)	변경 면적 (㎡)	증감	비고
택지	151,700	변경없음	-	
도로	18,679	"	-	
공공공지	1,101	"	-	
계	171,480	"	-	

5. 공중시설

시설명	당초 면적 (㎡)	변경 면적 (㎡)	증감	비고
도로	18,679	변경없음	-	
공공공지	1,101	"	-	
계	19,780	"	-	

6. 건축계획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주요용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	
건물형태	아파트 및 단독주택	"	-	
지베율	아파트 25% 이내 단독 50% 이내	"	-	
용적율	230% 이내	단독 200% 이내 아파트 240% 이하	-30 +10	
최고높이	42 미터 이내	변경없음	-	
배치도	별첨	생략	-	

7. 가토망 조서

노 수 명	망			면			시	점	종	합
	루	연장	면적	루	연장	면적				
	(M)	(M)	(M <sup>2</sup> )	(M)	(M)	(M <sup>2</sup> )				
중로1루1호선	20	171.6	3,432.6	작동	작동	작동	도	과 2- 176	도	과 1- 275
중로2루1호선	15	252.4	3,787.2	"	"	"	"	152	"	492 - 4
소로2루1호선	8	911	7,305.0	"	"	"	"	492- 2	"	1 - 255
소로3루1호선	6	272	1,636.6	"	"	"	"	132	"	292 - 27
소로3루2호선	6	286.7	1,717.0	"	"	"	"	363- 13	"	347 - 139
소로3루3호선	6	63	392	"	"	"	"	2- 236	"	2 - 289
소로4루1호선	4	102.7	492.6	"	"	"	"	363- 214	"	362 - 48

8. 지구분할 : 1지구, 2지구, 3지구 분할 기공

9. 변경사유 :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용적을 변경 결정.